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 임시회의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오후 10시
비대면 회의실 (Zoom)

제36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당신의 꿈에 날개를, <드림>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회대표자회의 임시회의 자료집

목 차

▶ 통과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2. 대의원 확정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5. 회의 진행 순서 통과

▶ 보고안건

1.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인준 안건

- 없음.

▶ 논의 및 의결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2.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3. 기타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 없음.

▶ 부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22.10.07.)

I . 통과 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2. 대의원 확정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5. 회의진행 순서 통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중략)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위	인원수
학생회장단	2명
공과대학 학생회장	나세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박선호
건축학과	5명
건축학전공 회장	정지은
건축학전공 대표	김유정
건축공학전공 대표	윤지영
2학년 대표	최은수
1학년 대표	김정윤
건설환경공학부	5명
학생회장	권윤경
부학생회장	류수진
부학생회장	유승현
2학년 대표	지영석
1학년 대표	허정민
광역반	1명
임시 대표	유지호
기계공학부	8명
학생회장	김대한
부학생회장	민윤정
2학년 A반 대표	박지민
2학년 B반 대표	신정하
2학년 C반 대표	이유창
1학년 A반 대표	이한결
1학년 B반 대표	나운성
1학년 C반 대표	윤수환

산업공학과	7명
학생회장	이송이
부학생회장	조건희
부학생회장	안현민
4학년 대표	윤승혁
3학년 대표	오수빈
2학년 대표	박석우
1학년 대표	박시우
에너지자원공학과	4명
학생회장	전영진
부학생회장	신원재
2학년 대표	김준휘
1학년 대표	박주언
원자핵공학과	6명
학생회장	신의식
부학생회장	손동현
4학년 대표	이진원
3학년 대표	김동민
2학년 대표	박경수
1학년 대표	김동하
재료공학부	5명
학생회장	김경오
부학생회장	김태규
부학생회장	김의현
2학년 대표	황어진
1학년 대표	우찬우

전기정보공학부	17명
학생회장	서지훈
부학생회장	송현석
4학년 R반 대표	정순호
4학년 룰루반 대표	장원재
4학년 랄라반 대표	정예원
3학년 R반 대표	이송은
3학년 룰루반 대표	박수완
3학년 랄라반 대표	송예은
3학년 C반 대표	정서본
2학년 R반 대표	김태훈
2학년 룰루반 대표	김나림
2학년 랄라반 대표	이준오
2학년 C반 대표	김승현
1학년 R반 대표	유현준
1학년 룰루반 대표	이준표
1학년 랄라반 대표	김석환
1학년 C반 대표	송기원
조선해양공학과	5명
학생회장	구준영
4학년 대표	김대상
3학년 대표	임재하
2학년 대표	노혜빈
1학년 대표	장세빈

컴퓨터공학부	6명
학생회장	문동희
부학생회장	한관엽
4학년 대표	유재훈
3학년 대표	조예나
2학년 대표	김민재
1학년 대표	박하준
항공우주공학과	6명
학생회장	이태호
부학생회장	이동규
4학년 대표	김유빈
3학년 대표	이주연
2학년 대표	이남용
1학년 대표	한진우
화학생물공학부	7명
학생회장	한정우
부학생회장	유은서
2학년 A반	김관우
2학년 B반	박정환
2학년 C반	최영인
1학년 Acid반	김민주
1학년 Base반	이도형
계	84명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1조 (시행세칙)

-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제3장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본 시행세칙은 공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 ③ 본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본 시행세칙은 공학대회 회기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 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회의진행과 관련된 원칙)

- ① 공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 회의공개 원칙 :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표결, 회의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발언자유 원칙 : 공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 원칙
 4. 소수의견 존중 원칙
 5. 일의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즉,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 원칙 :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안할 수 있다. 변안이 통과되면 다시 표결에 부친다.
- ②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의에서 찬반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한 다른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전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학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3조 (회의용어)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 ‘개의’를 제한한다.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7. “정회(停會)”란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8.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9.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10.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서 의안의 발제와 질의를 다루고, 제2독회에서 제1독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안을 축조심의 및 수정을 하고, 제3독회에서는 총괄심의와 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여 이후에 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독회 사이에 휴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11. “발언권(發言權)”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의결권(議決權)”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구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안건을 지칭한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공학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이견안은 동일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제5조 (발언)

-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질문발언, 찬반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 ②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상발언 :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규칙발언 : 회의 진행이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공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3.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발언 :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발언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이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 ③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 ④ 발언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 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 ⑥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제6조 (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 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 ②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 ③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계를 선포하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 ④ 의장은 회칙개정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삭제'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공고한다.

제7조 (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공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인준 안건
6. 논의 및 의결안건
7. 심의 안건 (예·결산)
8. 기타 안건 (결의문, 선언문 통과 등)

제8조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회(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활용한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회(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의안발의, 안건상정)

- ①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는 공학대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전까지,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운영위원회나 다음 공학대회로 이월한다.
- ④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 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 ⑥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계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여 단일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제10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

결한다.

-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 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1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 ① 찬반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2조 (표결)

- ①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대의원은 거수 혹은 구두로 표결한다. 단, 의장이 이의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어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표결을 박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인준 안건, 심의 안건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 ③ 찬성, 반대, 기권에 표결한 각 대의원 명단을 각 집계 때마다 속기한다. 대의원은 표결내용과 함께 단위명을 말하여야 하고 의장은 속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라인 플랫폼으로 표결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예·결산 심의에 관한 조치)

- ①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공학대회는 표결로써 예 . 결산 금액을 삭감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표결 방법의 구성은 의장의 직권에 따른다.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는 처리 후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결산안 발제자는 결산 후 잔액의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③ 의장은 심의안건 발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의하에 안건 순서 조정,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보고 안건

1.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인준안건

- 없음.

▶ 논의 및 의결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2.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3. 기타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 없음.

▶ 보고 안건

1.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인준안건

- 없음.

▶ 논의 및 의결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2.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3. 기타 학생회칙 개정의 건

▶ 심의 안건

- 없음.

Ⅱ. 보고 안건

1.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지난 3월 16일,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제36대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상의 잘못 및 학생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내부의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을 구성, 제16차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3/21)에서 이의 설치를 인준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총 6명의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위원과 함께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이름	소속 단위	학번	직위	비고
01	나세민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21	위원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02	박선호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	부위원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03	신의식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21	위원	운영위원 중 선임 (원자핵공학과 학생회장)
04	한정우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2	위원	운영위원 중 선임 (화학생물공학부 학생회장)
05	김지은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18	위원	외부 위원 섭외 (제34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06	이상민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17	위원	외부 위원 섭외 (제33대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첫 구성은 운영위원회 중 희망자 호선 및 대중모집을 통해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1차 회의에서 인원 수의 부족 및 선거운동본부·선거관리위원회 외 위원의 부재(4명의 위원 중 신의식 학우 1명)를 이유로 역대 5년간(지난 선거 포함)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단, 선거운동본부장, 선거관리위원 분들께 팀 활동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지은, 이상민 2명의 학우께서 참여에 응해주셔서 추가 위원을 호선하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활동 타임라인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3/16(목)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입장문 발표
3/22(수)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모집 및 세칙개정 의제 수합 진행
3/28(화)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참여 위원 1차 인준(제17차 운영위원회)
4/3(월)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1차 회의 진행 - 추가 위원 호선 여부 및 섭외 요청 대상 논의 - 세칙개정 팀에서 다룰 의제 및 활동 계획 논의
4/5(수)	1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역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단, 선거운동본부장, 선거관리위원 분들께 참여 요청 메일 발송
4/7(금)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회의록 드라이브 공지 - 매 회의의 회의록을 드라이브에 업로드
4/11(화)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참여 위원 2차 인준(제19차 운영위원회)
4/22(토)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정기 회의 일정 확정
5/9(화)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2차 회의 진행 -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위원들의 전반적 의견 조회 - 선거 당시 양 선거운동본부의 징계 목록 재확인 - 추후 팀에서 다룰 의제의 방향성 논의
5/21(일)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3차 회의 진행 -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의결 방식의 결함 여부 논의 - 연석회의 의결사항의 강제성 부여 여부 논의 - 연석회의 회의록의 기록·공표 의무 제도화에 관한 논의
5/23(화)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4차 회의 진행 - 3차 회의 의제(연석회의 관련) 중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재논의 - 세칙개정 팀 활동 일정 점검
5/30(화)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5차 회의 진행 - 공청회 일정 및 방향성 논의 - 선거관리위원회의의 학생 사회 의견 수용 제도에 관한 논의 - 총선관위 유권해석 당시 회의록(제63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12차 선관위 전원회의) 내 의제들 검토

6/3(토)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6차 회의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써 해임 및 탄핵 절차 논의 - 후보 등록 일정의 유연화 방안 논의 - 부정선거운동(제41조, 제44조) 악용 가능성 개선 방안 논의 - 기타 개정사항 논의
6/5(월)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 7차 회의 진행 - 선거관리위원장의 탄핵 절차 관련 개정안 재논의 -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의결사항 위반 시 징계 수위 재논의
6/6(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공지
6/8(목)	제1차 공청회 진행(35동 403호 및 인스타그램 라이브 스트리밍)
6/13(화)	제2차 공청회 진행(302동 620호 및 인스타그램 라이브 스트리밍)
6/21(수)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발의(제28차 운영위원회)

Ⅲ. 인준안건

- 없음.

IV. 논의 및 의결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2.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3. 기타 학생회칙 개정의 건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의 건

1. 개정 취지

2023 공과대학 회·세칙개정 특별위원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팀은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현행 선거시행세칙의 다음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견제 수단 강화

현행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책임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있지만, 구성 이후 위원들의 해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에서만 결정된다는 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현행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또한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을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 해임 권한을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였습니다.

(2)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제도적 개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것처럼,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에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구성 및 의결 방식 등 형식적인 부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도 문제시된 것처럼 연석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때 선거관리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맡게 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기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조항을 준용하여 연석회의의 의의를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선거운동 전반을 결정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결사항의 위반에 대한 징계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며, 그 효력은 회의 외적인 결정·합의가 아닌 오직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내의 의결사항에만 적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기록·공표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여 선거운동본부원을 비롯한 학우들께서 연석회의의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후보 등록 일정의 유연화

현행 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후보 등록 마감일 21시에 종료되며, 그 이후 1시간~2시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그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의무 소집이 진행됩니다. 늦은 마감 시간과 마감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학생회장단 후보 양측에게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후보 등록 및 이후 일정을 준용하고자 하였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학생사회 소통 방안 제도화

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사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로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권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청회의 진행을 공식적인 절차로 검토할 방안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처럼 선거 종료 이후의 공동선거평가단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이후에도 선거에 대한 피드백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학생회장단 선거가 대표자의 선출에서 나아가 학생사회의 발전적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5) 부정선거운동 악용의 제도적 개선

현행 시행세칙 제41조제3항과 제44조제4항은 각각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부정선거운동의 일부)에 대해 선거운동본부가 징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에서 다루는 상황은 선거운동본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기에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례의 징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경위를 조사한 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두 조항에서 명시하는 상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제44조제4항의 징계 수위를 제41조제3항의 징계 수위인 '시정명령'으로 동일하게 하향하고자 하였습니다.

(6) 기타 표기 통일 및 오타 수정

소속 단위의 표기, 선거운동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축약어 표기를 정식 용어로 통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각종 오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조문 이동	조문 이동
삭제	
	추가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10조 【구성】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0.></p> <p>④ 각 <u>학부·과·전공</u> 학생회의 대표는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2조 【투표관리요원】</p> <p>② 집행위원회, 각 <u>학부·과</u> 학생회,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요원의 과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6조 【선거운동본부 사무실】</p> <p>③ 선거운동본부가 등록 마감 시한까지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장소를 섭외해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에게 대여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u>학부·과</u> 학생회에 공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u>학부·과</u>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공간 확보를 요청한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제28조 【선거운동본부장】</p> <p>③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u>학부·과</u> 및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 【구성】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0.></p> <p>④ 각 <u>학부/과/전공/반</u> 학생회의 대표는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2조 【투표관리요원】</p> <p>② 집행위원회, 각 <u>학부/과/전공/반</u> 학생회,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요원의 과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6조 【선거운동본부 사무실】</p> <p>③ 선거운동본부가 등록 마감 시한까지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장소를 섭외해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에게 대여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u>학부/과/전공/반</u> 학생회에 공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u>학부/과/전공/반</u>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공간 확보를 요청한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p> <p>제28조 【선거운동본부장】</p> <p>③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u>학부/과/전공/반</u> 및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8조 【후보자의 겸직 금지】 3. 각 <u>학부·과·전공</u>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권한대행 <개정 2019.09.10.></p> <p>제40조 【후보 등록 등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이름, 소속 <u>학부·과</u> 및 학번</p> <p>제69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해당하는 선거의 명칭, 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및 소속 <u>학부·과</u>, 학번, 선거운동본부명, 선거운동본부의 슬로건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96조 【당선공고】 <개정 2019.09.10.> ③ 개표 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u>학부·과</u>, 학번</p>	<p>제38조 【후보자의 겸직 금지】 3. 각 <u>학부/과/전공/반</u>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권한대행 <개정 2019.09.10.></p> <p>제40조 【후보 등록 등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이름, 소속 <u>학부/과/전공/반</u> 및 학번</p> <p>제69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해당하는 선거의 명칭, 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및 소속 <u>학부/과/전공/반</u>, 학번, 선거운동본부명, 선거운동본부의 슬로건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96조 【당선공고】 <개정 2019.09.10.> ③ 개표 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u>학부/과/전공/반</u>, 학번</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과”, “학부·과·전공”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던 단위의 표기를 “학부/과/전공/반”으로 통일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13조 【위원의 해임】</p> <p>①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칙·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한 경우 4.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p>② 해임안은 선거관리위원 또는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의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p> <p>③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시 그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이 정지된다.</p> <p>④ 해임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한다.</p> <p>⑤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에 대해서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4조를 적용한다.</p>	<p>제13조 【위원의 해임】</p> <p>①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칙·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한 경우 4.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p>② 해임안은 선거관리위원 또는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의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p> <p>③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시 그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이 정지된다.</p> <p>④ <u>선거관리위원의 해임 권한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있으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u></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의결 기준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동일 조항을 준용하였습니다. • 제14조 선거관리위원장의 탄핵은 선거관리위원장 개인의 자격 정지의 의미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올바른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을 탄핵하는 자정작용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13조제5항을 삭제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또한 해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17조 【전체회의의 소집】</p> <p>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p>제21조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p> <p>① <u>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p> <p>② <u>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표결에 부칠 수 있다.</u></p> <p>③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다음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사항 	<p>제17조 【전체회의의 소집】</p> <p>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4. <u>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공청회 개최 요청에 따른 소집요구</u> <p>제21조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p> <p>① <u>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선거운동본부의 이견 조율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청 기능을 수행한다.</u></p> <p>② <u>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③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다음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사항 <p>3.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청회 개최 요청</p> <p>④ <u>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정으로 제3항제3호의 공청회 개최가 요청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u></p> <p>⑤ <u>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u></p>

(신설)

제21조의2 【의결】

①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충분한 토론에도 좁힐 수 없는 결정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절충안을 제안하거나 표결에 부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은 회의 종료 직후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단, 사안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내에서 특정 결정·합의사항의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의 경중을 파악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 또는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단,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외에서 이루어진 결정·합의사항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 【회의 결과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과지를 작성하여 폐회 후 2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녹음을 실시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녹음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전체회의의 경우, 제2항의 녹음본을 회의에 사용된 메신저의 대화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취지>

-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에 공청회 개최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제17조제4호, 제21조제3항제3호, 제21조제4항).
- 선거운동본부장의 존재 의의 및 회의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제21조제1항).
-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제21조제5항).
- 선거운동본부장의 의결을 별도의 조로 두어 상세히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제21조의2). 본래의 의결 방식에서 단순히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주도해야 하는 방향에 대하여 추가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의 효력 발생 시기와 위반 시 징계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기록·공표 의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제21조의3).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32조 【선거 공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p> <p>2. 제34조제2항의 후보 등록 마감 <u>시각</u></p> <p>제34조 【후보 등록 신청】</p> <p>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마지막 날 <u>21시</u>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p> <p>제35조 【후보 등록 심사】 <개정 2019.09.10.></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u>등록 마감 후 1시간 이후 2시간 이내</u>에 전체회의를 열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4조의2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 회원 명단과의 대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p>	<p>제32조 【선거 공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p> <p>2. 제34조제2항의 후보 등록 마감 <u>일정</u></p> <p>제34조 【후보 등록 신청】</p> <p>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마지막 날 <u>18시</u>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p> <p>제35조 【후보 등록 심사】 <개정 2019.09.10.></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u>등록 마감 직후</u> 전체회의를 열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4조의2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 회원 명단과의 대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마감 시각은 이미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제32조제2호에서 공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등록 마감 ‘시각’이 아닌 ‘일정’으로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와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 마감 시각을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동일한 18시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등록 마감 후 1시간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될 경우 이후의 일정(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등)이 너무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시간을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동일한 후보 등록 마감 직후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41조 【선거운동】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p> <p>제4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u>주의 1회</u>를 줄 수 있다.</p>	<p>제41조 【선거운동】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u>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경위 파악 후</u>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p> <p>제4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u>관련 경위 파악 후</u>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u>시정명령 1회</u>를 줄 수 있다.</p>
<p><개정 취지></p> <p>• 제41조제3항과 제44조제4항의 내용이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59조 【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제27조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 제28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제41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때 제48조제1항의 게시물·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제55조제4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p>제60조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줄 수 있다. <개정 2018.10.0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세 번 받았을 때 (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3회는 소멸한다) <개정 2019.09.10.> 	<p>제59조 【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줄 수 있다.</p> <p>1. 제21조의2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제27조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 제28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제41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때 제44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제48조제1항의 게시물·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제55조제4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p>제60조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줄 수 있다. <개정 2018.10.0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세 번 받았을 때 (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3회는 소멸한다) <개정 2019.09.10.>

<p>3. 제20조의2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p> <p>4. 제27조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p> <p>5. 제33조제4항의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허용되지 않을 활동을 할 때</p> <p>6. 제35조제2항의 회의에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및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p> <p>7. 제35조제4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p> <p>8. 제43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p> <p>9. 제44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p> <p>10. 제46종의2제5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 물품을 유권자에게 배포할 때</p> <p>11. 제47조제2항의 간담회 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간담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p> <p>12. 제48조제2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p> <p>13. 제49조제3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게시 수량을 어길 때</p> <p>14. 제50조제5항의 유인물 발행 수량을 어길 때</p> <p>15. 제51조제3항의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p>	<p>3. 제20조의2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p> <p>4. 제21조의2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p> <p>5. 제27조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p> <p>6. 제33조제4항의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허용되지 않을 활동을 할 때</p> <p>7. 제35조제2항의 회의에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및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p> <p>8. 제35조제4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p> <p>9. 제43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p> <p>10. 제46조의2제5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 물품을 유권자에게 배포할 때</p> <p>11. 제47조제2항의 간담회 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간담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p> <p>12. 제48조제2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p> <p>13. 제49조제3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게시 수량을 어길 때</p> <p>14. 제50조제5항의 유인물 발행 수량을 어길 때</p> <p>15. 제51조제3항의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p>
---	---

<p>16. 제52조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p> <p>17. 제53조 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p> <p>18. 제79조제2항의 후보자가 투표 권유 발언 중 허용되지 않은 발언을 할 때</p> <p>19. 제90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대리인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p> <p>20.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한 때</p>	<p>16. 제52조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p> <p>17. 제53조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p> <p>18. 제79조제2항의 후보자가 투표 권유 발언 중 허용되지 않은 발언을 할 때</p> <p>19. 제90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대리인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p> <p>20.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한 때</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의2제3항 신설에 따른 징계 조건 추가(시정명령의 경우 제59조제1호 신설, 주의의 경우 제60조제4호 신설) • 제44조제4항 개정에 의한 조문 이동(제60조제9호 → 제59조제6호)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절 선거 정리 사업</p> <p>제101조 【공동선거평가단】</p> <p>① 공동선거평가단은 선거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와, 선거 과정에서 생산된 의제의 평가 및 정리를 위한 기구이다.</p> <p>② 공동선거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의해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관리위원장 2. 각 선거운동본부장 3. 선거관리위원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p>③ 공동선거평가단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이후 공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공동의 과제들 3. 선거 과정에서 부각된 의제에 대한 논의 4. 낙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 및 집행가능성 <p>④ 공동선거평가단은 투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첫 모임을 소집한다.</p> <p>⑤ 공동선거평가단은 공과대학 학생회 또는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와의 공동 주최로 대중 평가회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중 평가회는 대자보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일정을 공고하고, 그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한다.</p> <p>⑥ 공동선거평가단의 회의 또는 대중 평가회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는 대자보를 통해 공고한다.</p>

<개정 취지>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이후에도 선거에 대한 피드백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선거평가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30조 【의무】 ②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및 <u>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 사항</u>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4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 <개정 2018.10.04.> ② 선거운동본부부의 착용에 대해서는 <u>본조</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u>본조</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6조 【유세】 ① 유세는 각 <u>선본</u>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p> <p>제50조 【유인물의 수량 및 규격의 제한】 ④ 유인물은 겉면에 “제00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 <<u>선본명</u>> 0차 리플렛” 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p> <p>제58조 【징계의 종류】 <u>주의가 회 누적되면 경고 회를 받은 ③ 2 1 것으로 한다.</u>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p>	<p>제30조 【의무】 ②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및 <u>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정·합의사항</u>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4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 <개정 2018.10.04.> ② 선거운동본부부의 착용에 대해서는 <u>본 조</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u>본 조</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6조 【유세】 ① 유세는 각 <u>선거운동본부</u>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p> <p>제50조 【유인물의 수량 및 규격의 제한】 ④ 유인물은 겉면에 “제00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 <<u>선거운동본부명</u>> 0차 리플렛” 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p> <p>제58조 【징계의 종류】 <u>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u>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p>

제65조 【전자투표】

⑤ 전자투표 이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 수단을 거쳐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각 선본의 핵심 선거공약, 정계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 투표한다.

제68조 【투표소】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각 선본의 핵심 선거 공약, 정계사항과 사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9조 【투표용지】

③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찬성_____”, “반대”란을 두어야 한다.

제72조 【본인 확인】

④ 휴학생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4조제6항에 의거, 제2항에 규정된 신분증과 재적증명서를 제시한 후 투표할 수 있다. 이때 투표관리요원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경우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 【정의】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10. 가투표율: 가투표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비율 (“(가투표수) / (총 유권자수)”)

19. 표차: 각 선본이 획득한 표수의 차

제65조 【전자투표】

⑤ 전자투표 이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 수단을 거쳐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각 선거운동본부의 핵심 선거공약, 정계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 투표한다.

제68조 【투표소】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각 선거운동본부의 핵심 선거 공약, 정계사항과 사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9조 【투표용지】

③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찬성_____”, “반대”란을 두어야 한다.

제72조 【본인 확인】

④ 휴학생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4조제6항에 의거, 제2항에 규정된 신분증과 재적증명서를 제시한 후 투표할 수 있다. 이때 투표관리요원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경우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 【정의】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10. 가투표율: 가투표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비율 (“(가투표수) / (총 유권자수)”)

19. 표차: 각 선거운동본부가 획득한 표수의 차

<p>제94조 【개표 결과】</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실투표수, 각 <u>선본</u> 득표수, 기권표의 수, 무효표의 수를 확정한다.</p> <p>② 개표 결과는 가투표수, 실투표수, 각 <u>선본</u> 득표수, 기권표의 수, 무효표의 수, 오차로 구성된다.</p> <p>제98조 【재투표】</p> <p>당선된 <u>선본이</u> 선거관리위원회의 7. 당선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p>	<p>제94조 【개표 결과】</p> <p>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실투표수, 각 <u>선거운동본부</u> 득표수, 기권표의 수, 무효표의 수를 확정한다.</p> <p>② 개표 결과는 가투표수, 실투표수, 각 <u>선거운동본부</u> 득표수, 기권표의 수, 무효표의 수, 오차로 구성된다.</p> <p>제98조 【재투표】</p> <p>7. 당선된 <u>선거운동본부가</u>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명칭으로의 용어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조제2항) “선거운동본부장회의” →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 (제46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8조제5항, 제84조제19호, 제94조제1·2항, 제98조제7호) “선본” → “선거운동본부” - (제72조제4항) “선관위” → “선거관리위원회” • 띄어쓰기 및 오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본 조” 띄어쓰기 수정 - (제58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84조제10호, 제98조제7호) 표기 오류 수정 	

학부/과/전공/반학생회 대의원 구성 관련 학생회칙 개정의 건

1.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당시 개정안 1의 부결로 자동 부결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2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광역반 학생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칙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 과정에서 학부/과 소속의 반학생회만을 의미했던 기존 학생회칙의 반학생회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였지만, 공과대학 연석회의 1차 회의(12/1),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12/5)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따르면 회칙이 개정되었음에도 학부/과 소속의 반학생회의 대의원 구성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지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 회칙(2022.10.07. 개정)상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반학생회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대의원 자격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과대학 내 12개의 학부/과 학생회 중에서는 그 소속 반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제36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및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구성을 확정할 때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 대의원은 제외되었으나, 앞으로의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대의원이 학부/과 대의원과 복수로 인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학부/과/전공/반 대표자의 직접선거 조건을 추가하여 대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때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개정 이전 조항	개정 이후 조항
삭제	
	추가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학년 대표 예외규정) <신설 2018.10.04.><개정 2022.10.07></p> <p>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p> <p>② <삭제 2022.10.07.></p> <p>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p> <p>④ <삭제 2022.10.07.></p> <p>⑤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p> <p>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p>	<p>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 대의원 예외 규정) <신설 2018.10.04.><개정 2022.10.07.></p> <p>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p> <p>② <삭제 2022.10.07.></p> <p>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p> <p>④ <삭제 2022.10.07.></p> <p>⑤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p> <p>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2의 경우 학년 대표뿐만 아니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전반적인 대의원 예외 규정을 나열하므로 이에 알맞게 조항 제목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된 취지는 반학생회가 학부/과 소속의 반학생회만을 의미하는 위계를 수정하고자 했던 것이나, 개정 전 제16조의2 제1항·제3항에는 ‘그 소속’이라는 표현이 존재해 조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학부/과에 소속된 반학생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16조에서 이미 학부/과 학생회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된 광역반과는 관련이 없던 조항이며, 오히려 해당 개정으로 인하여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 대의원이 학부/과 대의원과 중복하여 존재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16조의2를 2022 하반기 회칙개정 이전의 조항으로 되돌리고자 하였습니다. 	

<p>(신설)</p>	<p>제25조의2 (학부/과/전공/반 운영위원 예외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학생회장이 동시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운영위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2에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반학생회의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동시대의원을 제한하는 것처럼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그 구성의 예외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p>제42조 (학부/과/전공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u>각</u>—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u>중에서</u>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u>전체의</u>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u>해당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며</u>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항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조항 소제목에 누락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학부/과/전공/반 대표자의 직접선거 조건을 추가하여 대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할 때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총학생회칙 제44조를 참고하여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단이 해당 단위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p>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단, 연석회의의 구성은 제25조의2를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조항 소제목에 누락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 제25조의2의 신설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구성에도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반학생회의 동시 대의원 제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제16조의2, 제25조의2 및 제42조 관련 부연 설명

개정안 제16조의2와 제25조의2에 따르면 각각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반학생회의 대표자(학생회장)는 중복하여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조항 중 제42조(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는 별도로 학부/과 소속 반학생회 대표의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을 작성하였던 회·세척특위는 위 조항들의 배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 **학생회칙 제5장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한 것이 아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 ▶ 공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제2장·제3장을 통해 직접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42조가 두 개의 예외 조항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2023 상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당시 개정안 1의 부결로 자동 부결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칙의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되었던 개정 사안들입니다. 주로 오타 및 맞춤법, 통일되지 않은 표기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일자(<개정 YYYY.MM.DD.>)의 끝에 마침표(.)가 빠져있거나, 2개 이상의 개정일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생략되었거나, 개정일자 중간에 줄바꿈이 이루어지는 등 잘못되거나 통일되지 않은 개정일자 표기 방식을 일괄적으로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문장부호(마침표, 쉼표 등)가 생략되었거나 조항 중간에 줄바꿈이 이루어지는 등의 잘못된 맞춤법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하나의 조항과 그 세부 조항에 중복하여 표기된 개정일자(제42조, 제59조 등) 중 개정 취지가 동일한 경우 세부 조항의 개정일자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 조항 본문임에도 글자 모양이 ‘진하게’ 처리된 내용의 속성을 제거하고 일반 글자로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가독성 향상을 위해 장별 제목 및 소제목을 ‘가운데 맞춤’ 정렬하였습니다(신·구 조문 대조표에는 미포함).

2.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각 조항의 개정/신설 취지를 작성하여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대조표의 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삭제	
개정일자 표기 수정 전	개정일자 표기 수정 후
맞춤법 수정 전	맞춤법 수정 후
본문임에도 ‘진하게’ 속성이 적용된 본문	수정 후 본문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3조의2 (복수전공/전공진입생의 회원권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공과대학 내 전공을 복수전공 중인 자,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가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p>	<p>제3조의2 (회원권의 예외적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 2.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
<p><개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전공 중인 자’는 잘못된 표현으로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로 문구를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인정 대상을 호로 분리하고, 조항 제목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4조 (회원의 권리)</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6.0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p>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신설 2017.09.29> <개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및 당해 특별기구의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p> <p>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과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특별기구는 해당 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개정 2022.10.07.></p>	<p>제4조 (회원의 권리)</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6.0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p>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신설 2017.09.29.> <개정 2018.04.03.></p> <p>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및 당해 특별기구의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p> <p>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과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특별기구는 해당 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개정 2022.10.07.></p>

제6조 (기구)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학부/과 학생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7조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산하기구 및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

②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

제10조 (의장)

①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 총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

제11조 (소집)

①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정 2018.04.03][문구수정 2022.10.07.]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

제6조 (기구)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7조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산하기구 및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

②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

제10조 (의장)

①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 총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

제11조 (소집)

①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

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② 총투표는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투표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 6장**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공학대회는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

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② 총투표는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투표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6장**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공학대회는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p>1.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생회장</p> <p>2.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 각 학부/과/전공/반의 부학생회장은 최대 2인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3.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 대표 1인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18.10.04.]</p> <p>4. 공과대학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요구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삭제 2020.05.11.><신설 2022.10.07.></p> <p>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 대의원 예외 규정) <신설 2018.10.04.><개정 2022.10.07></p> <p>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p> <p>② <삭제 2022.10.07.></p> <p>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p>	<p>1.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생회장</p> <p>2.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 각 학부/과/전공/반의 부학생회장은 최대 2인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3.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 대표 1인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18.10.04.]</p> <p>4. 공과대학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요구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p> <p>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 대의원 예외 규정) <신설 2018.10.04.> <개정 2022.10.07.></p> <p>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p> <p>② <삭제 2022.10.07.></p> <p>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p>
---	---

<p>제17조 (의장)</p> <p>① 의장은 공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학대회를 대표한다.</p> <p>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p> <p>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p> <p>① 공학대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p> <p>②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56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제23조 (안전상정) <개정 2018.04.03></p> <p>①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전을 상정한다.</p> <p>②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p>	<p>제17조 (의장)</p> <p>① 의장은 공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학대회를 대표한다.</p> <p>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p> <p>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p> <p>① 공학대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p> <p>②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8.04.03.]</p> <p>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56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p> <p>제23조 (안전상정) <개정 2018.04.03.></p> <p>①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전을 상정한다.</p> <p>②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p>
---	---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등이 개최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으로 명하고,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 중 참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30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제33조 (임기)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9.22>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등이 개최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으로 명하고,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 중 참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30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제33조 (임기)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9.22.>

제34조 (선출) <문구수정 2014.10.29>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②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6장을 따른다.

제34조 (선출) [문구수정 2014.10.29.]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②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6장을 따른다.

<p>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p> <p>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제 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p> <p>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2018.04.03.]—<개정 2022.10.07.></p> <p>제43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7.03.30> <개정 2018.04.03.></p>	<p>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p> <p>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제 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p> <p>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p> <p>제43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7.03.30.> <개정 2018.04.03.></p>
---	---

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29. 2016.06.27.>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문구수정 2017.09.29.>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선관위는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과/전공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개정 2019.09.12.>

③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선관위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개정 2017.09.29> <개정 2019.09.12.>

제46조 (선거방법)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제48조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제48조 (선거 세칙)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4.10.29. 2016.06.27.>

①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9.12.>

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29., 2016.06.27.>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문구수정 2017.09.29.]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선관위는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과/전공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2.>

③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선관위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개정 2017.09.29.> <개정 2019.09.12.>

제46조 (선거방법)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제48조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제48조 (선거시행세칙)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4.10.29., 2016.06.27.>

①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9.12.>

<p>③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u>[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개정 2019.09.12.></u></p> <p>④ <u><삭제 2017.09.29></u></p> <p>⑤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썸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 \times (2000 + 250) / (3500 + 250)$) <u><개정 2014.10.29></u> [문구수정 2016.06.27.]</p> <p>⑥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p> <p>⑦ 이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u><개정 2017.09.29></u></p> <p>⑧ 선거시행세칙은 공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u><신설 2017.09.29></u></p> <p>⑨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u><신설 2017.09.29></u></p>	<p>③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u>[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 <개정 2019.09.12.></u></p> <p>④ <u><삭제 2017.09.29.></u></p> <p>⑤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썸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 \times (2000 + 250) / (3500 + 250)$) <u><개정 2014.10.29.></u> [문구수정 2016.06.27.]</p> <p>⑥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p> <p>⑦ 이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u><개정 2017.09.29.></u></p> <p>⑧ 선거시행세칙은 공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u><신설 2017.09.29.></u></p> <p>⑨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u><신설 2017.09.29.></u></p>
---	--

<p>제50조 (경비와 관리)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산하기구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u><개정 2016.09.22></u> <개정 2018.04.03.></p>	<p>제50조 (경비와 관리)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산하기구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u><개정 2016.09.22.></u> <개정 2018.04.03.></p>
<p>제5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33조에 명기된 임기에 준하며, 회기는 제1기 12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제2기는 제1기 이후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u><개정 2016.06.27, 2016.09.22., 2018.04.03.></u></p>	<p>제5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33조에 명기된 임기에 준하며, 회기는 제1기 12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제2기는 제1기 이후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u><개정 2016.06.27., 2016.09.22., 2018.04.03.></u></p>
<p>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u><개정 2016.09.22></u></p>	<p>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u><개정 2016.09.22.></u></p>
<p>제57조 (구성) <삭제 2018.04.03.></p>	<p>제57조 (구성) <삭제 2018.04.03.></p>
<p>제58조 (업무) <삭제 2018.04.03.></p>	<p>제58조 (업무) <삭제 2018.04.03.></p>
<p>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단, 연석회의의 구성은 제25조의2를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p> <p>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단, 연석회의의 구성은 제25조의2를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p>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 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1. 정식 명칭은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0000 (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2.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같음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③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④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60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 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식 명칭은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0000 (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한다.

2.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같음 한다.

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③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개정 2016.06.27>

④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제60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63조 (구성) 공과대학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로 구성된다. <신설 2017.03.30, 조문이동 2018.04.03.>

제64조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신설 2018.04.03.>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동아리 관련 제반 사항의 조정을 위해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제63조 (구성) 공과대학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로 구성된다. <신설 2017.03.30., 조문이동 2018.04.03.>

제64조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신설 2018.04.03.>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동아리 관련 제반 사항의 조정을 위해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
2.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집행위원 1인 <개정 2022.10.07>
3. 정식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제65조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 1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2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12장 산하기구 <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

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① 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2.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②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
2.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집행위원 1인 <개정 2022.10.07.>
3. 정식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제65조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1.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12장 산하기구 <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

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① 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2.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p>제2절 <삭제 2019.09.12.></p> <p>제72조 <삭제 2019.09.12.></p> <p>제73조 <삭제 2019.09.12.></p> <p>제3절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p> <p>제74조 <삭제 2022.10.07.></p> <p>제75조 <삭제 2022.10.07.></p> <p><부칙></p> <p>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p> <p>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p> <p>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6.06.27></p> <p>부칙(2022.10.07.)</p> <p>제4조 공과대학 학생회는 (가칭) 공학계열반 학생회칙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신설 2022.10.07></p> <p>제5조 공학계열반 학생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은 공학계열 학생회 구성 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2.10.07></p> <p>제6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효력은 공학계열반 학생회칙 제정과 동시에 말소되며, 이후 회칙개정을 통해 해당 부칙 및 세칙의 폐지를 논의한다. <신설 2022.10.07></p>	<p>제2절 <삭제 2019.09.12.></p> <p>제72조 <삭제 2019.09.12.></p> <p>제73조 <삭제 2019.09.12.></p> <p>제3절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p> <p>제74조 <삭제 2022.10.07.></p> <p>제75조 <삭제 2022.10.07.></p> <p><부칙></p> <p>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p> <p>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p> <p>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6.06.27.></p> <p>부칙(2022.10.07.)</p> <p>제4조 공과대학 학생회는 (가칭) 공학계열반 학생회칙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2.10.07.></p> <p>제5조 공학계열반 학생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은 공학계열 학생회 구성 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2.10.07.></p> <p>제6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효력은 공학계열반 학생회칙 제정과 동시에 말소되며, 이후 회칙개정을 통해 해당 부칙 및 세칙의 폐지를 논의한다. <신설 2022.10.07.></p>
--	---

V. 심의 안건

- 없음.

부 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22.1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17.03.30.
개정 2017.09.29.
개정 2018.04.03.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여 학생 자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의 학사 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제3조의2 (복수전공/전공진입생의 회원권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공과대학 내 전공을 복수전공 중인 자,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가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회 회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신설 2016.09.22.>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참가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6.09.22>

1. 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신설 2017.09.29> <개정 2018.04.03.>

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및 당해 특별기구의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

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특별기구는 해당 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8.04.03.><개정 2019.09.10.><개정 2022.10.07.>

③ <삭제 2018.04.03.>

④ <삭제 2018.04.03.>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기구)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학부/과 학생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7조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산하기구 및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

②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

제8조 (학교 당국과의 협의)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1. 본회의 활동에 관련한 회원의 징계 사항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3.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계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4. 기타 본회의 운영위원회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의장과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한 경우 학교 당국에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공과대학 학생 총회

제9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의장)

- ①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 총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

제11조 (소집)

- ①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정 2018.04.03][문구수정 2022.10.07.]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2조 (역할) 공과대학 학생 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 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 수에 더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 ② 총투표는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③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투표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 6장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제1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문구수정 2018.04.03.]

제15조 (지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라 한다.) 는 공과대학 학생 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제16조 (구성)

- ① 공학대회는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
 1.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2.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 각 학부/과/전공/반의 부학생회장은 최대 2인
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3.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 대표 1인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18.10.04.]
 4. 공과대학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요구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삭제 2020.05.11.><신설 2022.10.07.>
- ②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신설 2018.04.03.>
- ③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신설 2018.04.03.>

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학년 대표 예외규정) <신설 2018.10.04.><개정 2022.10.07>

-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② <삭제 2022.10.07.>
- 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 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④ <삭제 2022.10.07.>
- ⑤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 ① 의장은 공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학대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

제18조 (소집) 공학대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

- ① 정기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의장은 대회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8조의2 (공고) <신설 2018.04.03.>

- ①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장소, 일시, 소집 경위 및 과정,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 <개정 2018.04.03.>

- ① 공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문구수정 2018.04.03.]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6.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7. 기타 공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산하기구의 신설과 폐지 <개정 2018.04.03.>
- ② 공학대회는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제20조 (요구권) 공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에 대해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개정 2018.04.03.>
- ②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소집 요구

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

- ① 공학대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 ②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56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23조 (안건상정) <개정 2018.04.03.>

- ①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제8장에 의한 회칙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

제2절 운영위원회

제2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우 회칙 개정을 제외한 그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으로 명하고,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단 중 참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26조 (의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7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전체 예산 결산을 심의 검토 조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과반수의 발의로 공학대회나 공과대학 학생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집행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문구수정 2018.04.03.]
- ⑤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학대회에 상정한다.
- ⑥ 기타 공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각 학부/과 학생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을 보고받고 집행위원회와 산하기구,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개정 2018.04.03.>
- ⑧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결한다. <신설 2018.04.03.>

제28조 (소집) <개정 2018.04.03.>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및 집행위원회

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제30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 각 1인으로 한다.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제31조 (공과대학 학생회장)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공과대학 학생 총회 및 공학대회의 의장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3조 (임기)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9.22>

제34조 (선출) <문구수정 2014.10.29>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 ②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6장을 따른다.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6조 (신분보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제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문구수정 2018.04.03.]

③ 공학대회의 의결 사항 중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④ 기타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⑤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8.04.03.>

제2절 집행위원회

제38조 (지위)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9조 (구성) <개정 2018.04.03.>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설 2018.04.03.>

② 집행위원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신설 2018.04.03.>

③ 집행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04.03.>

제40조 (부서 및 업무)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부 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이 때 부서의 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8.04.03.>

제40조의2 (공간 조정) <신설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된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10.07.>

② 집행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심사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대표자 등에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2.10.07.>

③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간조정세칙을 따른다.

제5장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1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구성 및 활동은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칙에 의거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2조 (학부/과/전공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문구수정 2018.04.03.]<개정 2022.10.07>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중에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3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2017.03.30> <개정 2018.04.03.>

제6장 선거

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29. 2016.06.27.>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문구수정 2017.09.29.>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선관위는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과/전공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개정 2019.09.12.>

③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선관위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개정 2017.09.29><개정 2019.09.12.>

⑤ <삭제 2019.09.12.>

⑥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선관위의 구성은 각각 그 회칙에 따른다.

제46조 (선거방법)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제48조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제47조 (보궐선거)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① 학생회장단 모두가 유고일 때 해당 유고일로부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②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세부 내용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8.04.03.>

③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0.07.>

제48조 (선거 세칙)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4.10.29. 2016.06.27.>

①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9.12.>

③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개정 2019.09.12.>

④ <삭제 2017.09.29>

⑤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셈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 * (2000 + 250) / (3500 + 250)$) <개정 2014.10.29> [문구수정 2016.06.27.]

⑥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⑦ 이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09.29>

⑧ 선거시행세칙은 공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신설 2017.09.29>

⑨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7.09.29>

제7장 재정

제49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0조 (경비와 관리)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산하기구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9.22> <개정 2018.04.03.>

제5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33조에 명기된 임기에 준하며, 회기는 제1기 12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제2기는 제1기 이후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8.04.03.>

제52조 (예산)

① 매 회기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검토·조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04.03.>

② 공학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예산안이 의결 받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

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09.22>

제54조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 지원) [문구수정 2016.06.27.]

① 모든 지원은 집행위가 심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6.06.27.]

② 지원 대상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중적 기획 행사로 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③ <삭제 2018.04.03.>

④ <삭제 2018.04.03.>

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단위는 사업 1주전 사업계획서를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 실행 후 1주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한다. 단, 내역으로 항목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될 경우 예산 지원을 집행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제8장 회칙 개정

제55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공학 대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
- ② 운영위원회의 발의
- ③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56조 (의결 공포) 발의시 공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9장 공과대학 학생회 준비위원회

제57조 (구성) <삭제 2018.04.03.>

제58조 (업무) <삭제 2018.04.03.>

제10장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1. 정식 명칭은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0000 (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2.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같음한다. [문구수정 2022.10.07.]

3.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 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③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④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2022.10.07.]

제60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11장 동아리 <전면개정 2018.04.03.> <개정 2020.05.11.>

제62조 (목적)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대학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7.03.30.]

제63조 (구성) 공과대학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로 구성된다.
<신설
2017.03.30, 조문이동 2018.04.03.>

제64조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신설 2018.04.03.>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① 공과대학 동아리 관련 제반 사항의 조정을 위해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

2.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집행위원 1인 <개정 2022.10.07>

3. 정식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 ③ 가등록 동아리의 대표자는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발언권을 가진다.
- ④ 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회장단 중 1인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⑤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1학기에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65조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 1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2 공과대학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12장 산하기구 <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

제1절 총칙

제66조 (구성)

- ① 산하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산하기구의 등록은 제8장에 따른 회칙 개정을 통해 한다.
 - 1. <삭제 2019.09.12.>
 - 2.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
- ③ 산하기구는 기구의 장 1인을 둔다.
- ④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산하기구의 장과 회계담당자를 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나 구성 등에 관하여 각 산하기구가 각 기구의 운영세칙(이하 '기구운영세칙')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에 따른 인선 현황을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산하기구는 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산하기구가 회칙개정,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당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산하기구를 대상으로 특별 공간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0.05.11.>

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① 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2.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② 공학대회는 산하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가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산하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공학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대학본부 및 공과대학본부, 기타 외부세력과 협력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제68조 (지위)

① 산하기구는 집행위원회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발의하는 의안이 산하기구의 의견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산하기구 및 집행위원회는 각 이안(異案)을 운영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제69조 (재정)

① 산하기구의 재원은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비에서 지급한다.

② 산하기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최종 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제70조 (보고 및 감사)

① 산하기구의 장은 공학대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② 산하기구의 장은 5월과 11월의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학대회나 운영위원회 3일 전까지 각 산하기구의 장들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산하기구의 운영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구는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71조 (기구운영세칙) 각 산하기구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그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삭제 2019.09.12.>

제72조 <삭제 2019.09.12.>

제73조 <삭제 2019.09.12.>

제3절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

제74조 <삭제 2022.10.07.>

제75조 <삭제 2022.10.07>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총학생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6.06.27>

부칙(2022.10.07.)

제4조 공과대학 학생회는 (가칭) 공학계열반 학생회칙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신설 2022.10.07>

제5조 공학계열반 학생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은 공학계열 학생회 구성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2.10.07>

제6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효력은 공학계열반 학생회칙 제정과 동시에 말소되며, 이후 회칙개정을 통해 해당 부칙 및 세칙의 폐지를 논의한다. <신설 2022.10.07>

부칙(2018.04.03.) <삭제 2019.09.12.>